



분야별 용역 대가기준의 지형

고시 25건과 지침 2건에 나타난 대가 산정의 공통 구조와 변형

작성	위탁관리 본부장
검수	연구소장
www.kiem.re.kr	

요약

정리의 대상

본 연구소 자료실 수록 27건

위탁사무의 대가가 얼마로 정해지는가는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 규범만으로 정해지지 아니함. 지방계약법령은 예정가격을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한다는 일반 원칙을 정할 뿐이고, 그 각각을 어떻게 산출하는가는 사무의 분야마다 소관 부처가 따로 고시한 **대가기준**이 정하고 있음. 실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이 분야별 고시임.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수록한 분야별 대가 산정 규범은 **27건**이며, 발령기관은 **13개소**임. 27건을 한자리에 놓고 보면 규범군의 구성이 드러남. 형식은 **고시 25건과 지침 2건**이고, 성격은 발주자가 용역을 구매할 때 쓰는 **용역 대가기준 14건**, 법정 업무를 민간에 대행시킬 때 쓰는 **대행비용 산정기준 11건**, 시설 운영비를 산출하는 **원가 기준 2건**의 세 갈래로 나뉨.

흩어져 있는 것에 견주어 내용의 공통성은 뚜렷함.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라는 네 요소로 대가를 구성하는 것이 **20건**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세운 구성이 분야를 넘어 되풀이되고 있음. 나머지는 네 번째 요소를 **학술료·창작료**로 바꾸거나, 요율 하나로 같음하거나, 원가계산의 **일반관리비·이윤** 구성을 쓰고 있음.

규범의 관리 방식에서도 공통점이 확인됨. **23건**이 재검토기한 조문을 두고 있고, 현행 회차 가운데 **11건(41%)**이 2025년 이후 시행분임.

위탁 실무가 이 규범군을 알아야 하는 까닭은 **적용의 순서**에 있음. 소관 부처의 대가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계산의 방법을 정하고,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은 그 기준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 규범이 됨.

이 보고서는 27건의 서지와 조문 구성을 대조하여 **갈래·공통 구조·분야별 변형·관리 방식**의 네 축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위탁 실무의 검토 순서로 옮긴 것임. 각 고시의 요율 수치와 별표의 품셈은 다루지 아니하였음.

정리한 규범	발령기관	네 요소 구조	재검토기한 조문
27건	13개소	20건	23건

보고서 핵심

분야별 대가기준은 소관 부처에 따라 흩어져 있으나 **구성은 하나로 수렴**함. 실무에서 먼저 할 일은 해당 사무에 **소관 부처의 고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있으면 그 고시가 지방계약법령의 일반 원가계산에 **앞서 적용**됨. 다만 27건의 41%가 최근 2년 안에 시행된 회차이므로, 적용 시점의 **현행 회차**와 그 기준이 인용하는 **노임단가의 공표 연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I. 규범군의 범위

01 세 갈래의 구분

쓰임에 따른 구분

27건의 적용 대상을 본 연구소가 분류

27건은 이름이 제각각이나 **무엇을 위한 금액인가**로 나누면 세 갈래가 됨. 이 구분은 위탁 실무에서 어느 규범을 참조하여야 하는지를 정함.

표 1. 대가 산정 규범의 세 갈래

구분	건수	쓰이는 자리
용역 대가기준	14	발주자가 설계·감리·조사·디자인 등 용역 을 구매할 때의 대가 — 엔지니어링·건설엔지니어링·건축설계·측량·산림·해양조사·국가유산수리·매장유산·디자인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11	법령이 정한 업무를 민간이 대행 할 때 지급하는 비용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에너지사용계획협의·방재관리대책·재해경감활동계획·기술진단·계측·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원가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운영비 를 산출할 때의 기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료: 27건의 적용 대상 조문을 본 연구소가 분류

세 갈래는 대가의 근거가 서로 다름 — 용역 대가기준은 **계약**에, 대행비용은 법령이 지운 의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령**에, 원가 기준은 시설 **운영의 실비**에 각각 근거를 둬.

위탁 실무와 가장 가까운 것은 **대행비용 갈래**임. 법령이 어떤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그 업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사무의 성격이 '위탁'보다 '대행'에 가까운 경우가 여기에 모임. 위탁·위임·대행의 구분은 앞선 보고서에서 다루었음(**KIEM-REPO-2026-01**).

그림 1. 갈래별 구성 (건)



자료: 표 1을 그림으로 옮긴 것

I. 규범군의 범위 (계속)

02 발령기관의 분산

13개 기관

27건의 발령기관

27건을 낸 기관은 **13개소**임. 한 부처가 모아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무를 소관하는 부처가 각각** 정하는 구조이므로, 실무에서 규범을 찾으려면 사무의 소관 부처부터 확인하여야 함.

표 2. 발령기관별 건수

구분	건수	대상 분야
국토교통부	4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감리, 교통영향평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4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공공하수도·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행정안전부	3	방재관리대책, 재해경감활동계획, 계측
국가유산청	3	국가유산수리 설계·감리, 매장유산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감리
산업통상부	2	엔지니어링사업, 산업디자인 개발
산림청	2	산림기술용역, 산림경영계획 작성
환경부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침 2건)
그 밖 5개소	5	소방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지리정보원 각 1건

자료: 27건의 발령기관을 본 연구소가 집계

기관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실무에 두 가지를 뜻함. 첫째, **한 사업에 여러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개발사업 하나에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매장유산 조사가 모두 따르면 각각 다른 부처의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게 됨. 둘째, **기관의 이름이 바뀌면 규범도 함께 손질될** — 표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정부조직과 소관 법률의 개편에 따라 이름이 바뀐 뒤의 표기이며, 그 개편이 고시의 개정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음.

I. 규범군의 범위 (계속)

03 형식과 회차의 시기

고시와 지침

27건의 형식

형식은 **고시 25건**과 **지침 2건**임. 둘은 효력의 성격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다루는 방법도 달라짐.

표 3. 고시와 지침의 차이

구분	건수	성격
고시	25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발령됨. 위임의 범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법령정보에 행정규칙으로 등록되어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지침	2	행정 내부의 기준으로 발간됨.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 서류에 편입되면 계약상 기준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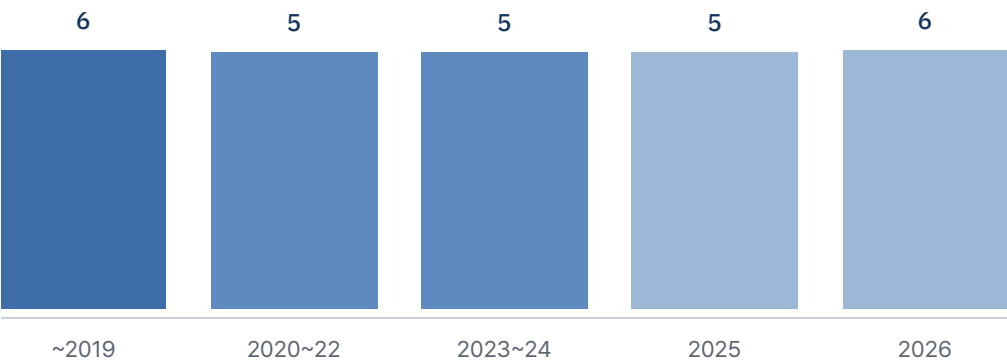
자료: 27건의 근거 조항과 발령 형식을 본 연구소가 정리

지침 2건이 모두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유의할 만함. 용역의 대가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가 정하는 데 견주어, 시설 운영비는 지침의 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지침을 적용하려면 위·수탁 협약이나 계약 특수조건에 그 지침을 따른다는 근거를 두는 편이 분명함.

갱신의 빈도

현행 회차의 시행일

그림 2. 현행 회차의 시행 시기 (건)



자료: 각 규범의 현행 회차 시행일을 본 연구소가 구간별로 집계

2025년 이후 시행 회차가 11건으로 27건의 41%임. 규범군이 활발히 갱신되고 있으므로, 과거에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말고 **적용 시점의 회차**를 다시 확인하여야 함. 한편 가장 오래된 회차는 2012년 시행 지침으로, 같은 규범군 안에서도 갱신의 간격이 크게 다름.

II. 공통 구조

04 네 요소의 반복

구성의 수렴

27건의 조문 제목 대조

27건의 조문 제목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이름이 되풀이됨.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를 각각 독립한 조문으로 두는 것이 **17건**이고, 네 번째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것이 3건이어서 **합계 20건**이 같은 구성을 따름.

표 4. 네 요소의 구성과 검증 지점

구분	내용	검증 사항
직접인건비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 등급별 노임단가 × 투입 인원 · 기간	투입 인원의 산출근거, 단가의 공표 연도
직접경비	여비·시험비·장비사용료·자료비 등 그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 실비로 계상함	증빙의 존부, 중복 계상 여부
제경비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 비용 — 직접인건비에 대한 비율	적용 비율이 고시 범위 안인지
기술료	기술의 축적·사용에 대한 대가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에 대한 비율	같음

자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20건의 조문 구성을 본 연구소가 정리
이 구성의 원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임. 조문 31개로 27건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로 두는 범위가 다른 기준의 참조점이 되고 있음.

구성이 같다는 것은 실무에 이점이 됨. 분야가 달라도 **검토할 항목이 같으므로**, 하나의 점검 순서로 여러 분야의 대가 산출서를 읽을 수 있음. 반대로 위험도 같음 — 비율로 계상되는 제경비와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연동되므로**, 투입 인원과 노임단가의 적정성이 대가 전체의 적정성을 좌우함. 네 요소 가운데 실질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앞의 둘**이고, 뒤의 둘은 비율이 고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가 많음.

구성이 퍼진 경로는 **준용**으로 보임. 여러 고시가 세부를 스스로 정하는 대신 「다른 기준 등의 준용」 조문을 두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그 예임.

II. 공통 구조 (계속)

05 두 산정방식

쌓는 방식과 곱하는 방식

엔지니어링·건설엔지니어링·
건축사 대가기준

네 요소를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두 방식이 갈림. 여러 고시가 두 방식을 함께 규정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느 것을 쓸지 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5.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요율방식

구분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요율방식
산출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를 각각 계산하여 더함	공사비·사업비에 고시된 요율을 곱하여 한 번에 얻음
필요한 자료	투입 인원 계획, 등급별 노임단가, 경비 명세	요율표와 요율대상액
장점	업무의 실제 투입을 반영하므로 산출근거가 분명함	계산이 간명하고 발주 준비 기간이 짧음
한계	인원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산출 부담이 큼	개별 사업의 난이도·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움
쓰는 자리	업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용역, 조사· 진단·계획 수립	공사에 부수하는 설계·감리와 같이 규모로 가늠되는 용역

자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규정을 본 연구소가 대조

위탁 실무의 관점에서 두 방식의 차이는 **검증의 지점**이 다르다는 데 있음. 실비정액가산방식은 **투입 인원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여야 하고, 요율방식은 **요율대상액의 산정**을 확인하여야 함.

요율대상액에서 무엇을 빼는지가 고시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요율만 맞추고 대상액을 그대로 두면 금액이 달라짐.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이 그 예임. 이 고시는
요율방식을 쓰면서 **요율대상액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경비를 빼도록** 규정하고, 위탁요율
자체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요율과 대상액이 각각 다른 규범에 매여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금액이 맞지
아니하게 됨.

III. 분야에 따른 변형

06 네 번째 요소의 대체

기술료 자리의 변형

27건의 조문 제목 대조

앞의 세 요소는 27건에서 이름이 거의 같으나, **네 번째 요소**는 분야의 성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규정됨. 무엇을 대가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조문의 이름에 나타나 있음.

표 6. 네 번째 요소의 이름

구분	규정	인정 범위
기술료	엔지니어링·측량·건설엔지니어링 ·산림·영향평가 등 17건	기술의 축적과 사용에 대한 대가
학술료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조사·연구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대가
창작료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창작 결과물 자체에 대한 대가

자료: 각 고시의 조문 제목을 본 연구소가 대조

창작료는 결과물의 창작성 자체를 대가로 보는 드문 규정임. 기술료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대가라면, 창작료는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대가의 근거가 다름. 디자인·전시 분야의 용역을 위탁·발주할 때 이 항목이 누락되면 대가가 과소 산정될 수 있음. **학술료**는 매장유산 조사에서 쓰이며, 조사 결과가 보고서와 학술 자료로 남는 업무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이름이 같리는 지점이 **네 번째 요소**라는 점에는 까닭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앞의 세 요소는 **투입**을 재는 항목이어서 분야가 달라도 재는 방법이 같으나, 네 번째 요소는 그 일의 **결과에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항목이므로 분야의 성격이 드러남.

이 항목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에 비율을 곱해 계상되므로 금액의 비중이 작지 않음. 용역의 성격에 맞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항목이 빠지면 산출 총액이 달라짐.

네 요소를 두지 아니한 7건

같은 자료

나머지 **7건**은 네 요소를 개별 조문으로 두지 않음.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정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세 갈래로 나뉨 — ① 조문 수가 서너 개에 그치고 **비용을 별표의 산식·단가표로 정한 것**(공공하수도·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 ② 요율 하나로 대가를 정하는 것(농어촌정비사업 위탁요율) ③ 원가계산의 구성을 쓰는 지침 2건임. 「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은 조문 형식이 아니라 단가표 형태로 발령되어, 해마다 새 고시를 확인하여야 함.

III. 분야에 따른 변형 (계속)

07 시설 운영비의 산출

지침 두 건

환경부 지침 2건

27건 가운데 **지침 2건**은 성격이 다름.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의 운영비**를 산출하는 기준이므로, 네 요소가 아니라 원가계산의 구성을 씀.

표 7. 원가 기준 두 건

구분	내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의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함. 운영비를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으로 나누어 항목별 산출방법을 정함.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막고 적정 운영비를 지급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공법 선정·시설 규모 산정·운영비 보전을 담고 있음. 공법 선정에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공법을 고르도록 하는 경제성 평가 원칙을 두고, 준공 후 실제 운영비가 제안 당시 금액을 넘는 경우에 대비한 운영비 차액 보전 약정 을 계약 체결 시 두도록 하였음

자료: 두 지침의 목적·적용범위·운영 조문을 본 연구소가 정리

주목할 점은 두 갈래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임. 소각시설 지침은 인건비를 산정할 때 소요 인원수를 먼저 정한 뒤 **등급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그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시설 운영비를 산출하는 원가 기준이 용역 대가기준의 단가 체계를 **그대로 인용하는** 구조임.

따라서 소각시설의 위탁운영 원가를 검토할 때에는 지침만 보아서는 부족하고, 그 지침이 가리키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노임단가**까지 함께 확인하여야 함. 위탁금 산정의 일반 구조는 앞선 보고서에서 다루었음(**KIEM-REPO-2023-01**).

지침이 만들어진 배경도 위탁 실무와 닿아 있음. 소각시설 지침은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문제로 들고 적정 운영비의 지급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낮은 금액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규범의 목적 조문에 적혀 있는 것임. 하수슬러지 지침의 운영비 차액 보전 약정도 준공 후 실제 운영비가 제안 금액을 넘는 상황을 예정한 장치임.

두 지침 모두 **대가의 하한을 지키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음. 다만 지침은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협약이나 계약 특수조건에 준거를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편이 분명함.

IV. 규범의 관리

08 개정의 양상

회차의 성격

27건의 개정유형

각 규범의 현행 회차가 **어떤 성격의 개정인가**는 실무에 영향을 줌. 종전 기준과 조문이 대응되는지, 실질 내용이 바뀌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임.

표 8. 현행 회차의 개정유형

구분	건수	실무에서 뜻하는 바
일부개정	17	조문 체계는 유지되고 일부만 바뀜 — 종전 기준과 조문 번호가 대응됨
제정	4	직전 회차가 없음 — 종전 관행과 비교할 기준이 없음
전부개정	3	체계가 새로 짜임 — 종전 기준과 조문 번호가 대응되지 않음
타법개정·그 밖	3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실질 내용의 변경은 크지 않음

자료: 27건의 개정유형 표시를 본 연구소가 집계. 그 밖은 지침의 「1차개정」, 「개정」 표기 2건

전부개정 3건은 특히 주의가 필요함.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회차가 전부개정이어서 종전 기준과 조문이 대응되지 아니하며, 시행일 이후 발주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계약 준비 중에 회차가 바뀌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발주 시점과 시행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전부개정은 **근거 법률이 새로 생기면 대가기준도 함께 새로 짜인다는 것을 보여 줌.**

개정이 **실질 내용의 변경이 아닌 경우도** 있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현행 회차가 **같은 고시번호(제2025-165호)**인데, 이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 명칭을 일괄로 고친 개정이기 때문임. 이런 회차는 최신판이더라도 실질 개정 내용은 직전 회차에서 확인하여야 함.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의 타법개정도 같은 성격임.

제정 4건은 규범군이 넓어져 온 자취를 보여 줌 — 산업디자인 개발(2019),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비용(202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2022)는 **종전에 기준이 없던 업무에 기준이 새로 생긴 사례**이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2026)는 해마다 새로 고시되는 것임.

제정 회차는 직전 회차가 없으므로 **종전 관행과 견주어 볼 기준이 없음.**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같이 시설 위탁운영 계약에 포함되기 쉬운 업무는, 계약 범위에 그 업무가 들어 있는지와 표준 점검비가 별도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IV. 규범의 관리 (계속)

09 재검토기한과 단가의 연결

일몰 조문

27건의 조문 제목

27건 중 **23건**이 **재검토기한** 조문을 두고 있음. 일정 기간마다 존치 여부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이 규범군이 **주기적으로 손질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27건의 41%가 최근 2년 안에 시행된 회차라는 사실과 맞물림. 조문을 두지 아니한 4건은 지침 2건과 단가표 형태의 고시 등임.

노임단가와 연결

10건의 조문·유의사항

네 요소 구조에서 금액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직접인건비의 단가**임. 27건 가운데 **10건**이 조문이나 유의사항에서 공표 노임단가를 인용하고 있음.

표 9. 대가기준이 인용하는 공표 단가

구분	쓰이는 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등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측량대가의 기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가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자료: 각 기준의 직접인건비 조문과 유의사항을 본 연구소가 정리. 자료실에 각 노임단가의 연차별 공표분을 수록하였음

구조를 정리하면 세 층이 됨 — **노임단가**가 단가를 정하고, **대가기준**이 계산의 방법을 정하며, **계약 규범**이 그 결과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함. 대가기준만 최신 회차로 확인하고 노임단가를 과거 연도 것으로 두면 금액이 어긋나므로, **두 가지의 적용 연도를 함께 맞추어야** 함. 노임단가는 대체로 해마다 공표되고 대가기준은 몇 해에 한 번 개정되므로, 갱신의 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여야 함.

세 층의 연결을 소각시설 위탁운영으로 옮기면 이러함 — ① 지침이 소요 인원수를 정하는 방법과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그 등급 구분과 단가의 적용 방법을 정하며 ③ 해마다 공표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가 실제 금액을 정함. 세 층 가운데 하나만 과거 자료로 두어도 산출 금액이 달라지므로, **세 가지를 같은 시점으로 맞추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이 됨.

V. 실무의 적용

10 적용 기준의 선택

선택의 지점

본 연구소 정리

분야가 겹치는 곳에서는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함. 27건을 대조하면서 확인된 선택의 지점은 다음과 같음.

표 10. 기준이 갈리는 지점

구분	구분 기준
디자인 영역	산업디자인 개발(산업통상부)과 공공디자인 영역(문화체육관광부)은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름 — 영역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골라야 함
기술진단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과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대상 시설이 다름 — 위탁 대상 시설의 종류로 구분함
영향평가	환경·교통·해양이용·에너지사용계획은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기준임 — 하나의 사업에 여러 평가가 따르면 각각의 기준을 적용함
국가유산	수리 설계·수리 감리·매장유산 조사가 각각 별개 기준임 — 업무 단계로 구분함
설계·감리	건축물은 건축사 대가기준, 건설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농어촌정비사업은 위탁요율 고시가 각각 적용됨
측량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국립해양조사원)은 대상 공간이 다름 — 육상과 해양으로 구분함
안전 관련 진단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계측, 방재관리대책이 각각 별개 기준임 — 시설의 종류와 업무의 근거 법률로 구분함
해마다 고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는 매년 새로 고시 됨 —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함

자료: 각 고시의 적용범위 조문과 유의사항을 본 연구소가 대조

분야별 고시가 **없는 경우도** 있음. 그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으로 돌아가 예정가격을 산정함. 따라서 첫 물음은 「어느 고시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해당 사무에 소관 고시가 있는가」**임.

기준을 고르는 실마리는 대체로 **근거 법률**에 있음. 표의 여섯 자리는 모두 업무가 비슷해 보이나 근거 법률이 다른 경우이며, 근거 법률이 같으면 소관 부처와 고시가 함께 같림. 위탁하려는 사무가 어느 법률에 따른 업무인지를 먼저 특정하면 적용할 기준도 따라서 정해지는 구조임.

V. 실무의 적용 (계속)

11 검토의 순서

다섯 단계

본 연구소 정리

이 보고서에서 확인한 구조를 위탁 실무의 검토 순서로 옮기면 다섯 단계가 됨.

표 11. 대가 검토의 순서

순번	단계	확인 사항
1	소관 고시의 존부	사무를 소관하는 부처에 대가기준·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있는지 확인함. 없으면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으로 돌아감
2	현행 회차의 확인	시행일과 개정유형을 확인함. 전부개정이면 종전 기준과 조문이 대응되지 아니하고, 기관명 일괄개정이면 실질 내용은 직전 회차에 있음
3	산정방식의 결정	실비정액가산방식인지 요율방식인지 확인함. 고시가 둘을 함께 두면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근거를 남김
4	단가의 연도 대조	직접인건비에 쓰는 노임단가의 공표 연도가 대가기준의 적용 시점과 맞는지 확인함
5	산출근거의 확보	투입 인원 계획 또는 요율대상액의 산출근거를 계약 서류로 남김 — 정산과 검증의 기준이 됨

자료: 본 보고서 I~IV장의 정리를 본 연구소가 순서로 옮긴 것

다섯 단계 가운데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2단계와 4단계**로 보임. 규범을 한 번 확인해 두면 그대로 쓰기 쉬우나, 이 규범군은 27건의 41%가 최근 2년 안에 시행된 회차일 만큼 갱신이 잦음. 대가기준과 노임단가의 **적용 연도를 함께 맞추는 것**이 금액의 적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임.

5단계는 산정이 끝난 뒤가 아니라 **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비목별 산출근거가 남아 있지 아니하면 뒤의 정산·검증·감사에서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산정 당시의 판단이 재현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임.

이 순서는 위탁기관이 예정가격을 세울 때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산출서를 검토할 때에 모두 쓸 수 있음. 다만 검토하는 쪽에서는 순서를 뒤에서부터 밟는 편이 효율적임 — 산출서에 **어느 고시를 적용하였는지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고시의 회차와 노임단가의 연도를 대조한 뒤, 마지막으로 투입 인원이나 요율대상액의 산출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임. 적용 고시가 적혀 있지 아니한 산출서는 그 자체로 1단계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거와 한계

대조한 규범

표 12. 이 보고서가 대조한 규범

구분	건수	주요 규범
용역 대가기준	1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감리 대가기준,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11	환경영향평가등·교통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너지사용계획협의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방재관리대책·재해경감활동계획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공공하수도·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등
원가 기준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

각 규범의 발령기관·고시번호·시행일은 본 연구소 자료실의 해당 게시물에 수록하였음

이 보고서의 한계

유의 사항

2026년 8월까지 확인한 현행 회차 기준임. 이 보고서는 각 규범의 **서지와 조문 제목, 목적·적용범위 조문**을 대조한 것이며, **요율 수치와 별표의 품셈·단가표는 다루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실제 금액 산정에는 해당 고시의 본문과 별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대상은 본 연구소 자료실에 수록한 27건이므로 **분야별 대가기준의 전수가 아니며**, 수록하지 아니한 분야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음. 갈래의 구분은 각 규범의 적용 대상을 근거로 본 연구소가 나눈 것으로 법령상 분류가 아님. 요소의 유무는 **조문 제목으로 세었으므로 다른 조문 안에 같은 내용을 담은 경우는 잡히지 아니함**. 고시와 지침의 효력에 관한 서술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구속력은 근거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함께 볼 자료

위탁금이 계산되는 일반 구조는 **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KIEM-REPO-2023-01), 위탁·위임·대행의 개념 구분은 **위탁·위임·대행의 개념 구별**(KIEM-REPO-2026-01)에서 각각 다루었음.

문의

내용의 문의는 **한국관리위탁연구소**로 하시기 바람.